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8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6. 11. 25(금) 07: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8회 정기이사회

- 일 시 : 2016년 11월 25(금) 07:30
- 장 소 : 달개비(중구 정동)
- 재적이사 : 11명, 재적감사 : 2명
- 출석이사 : 7명
- 출석감사 : 2명

○○○이사장이 제8회 정기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부장이 제8회 정기이사회의 성원을 보고하다.

○○○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부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다.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서울장학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3. 서울장학재단 기관장 청렴도 결과 보고
4. 서울장학재단 운영사항 보고
 - 1)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다.
 - 2) 대외협력 회의 참석에 대하여 보고하다.
 - 3)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하여 보고하다.
 - 4) 2016년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원 실적 및 장학사업 주요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다.
 - 5) 서울장학재단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다.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38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8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제138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장학재단의 임원 선임 및 연임에 관한 건을 설명하다. ○○○ 부장이 ○○○ 이사가 사임하고 재단 임원증 ○○○, ○○○, ○○○, ○○○, ○○○, ○○○ 감사가 2017년 1월7일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안건을 성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부장이 임기가 만료예정인 임원에게 연임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본바, ○○○ 감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이사께서는 연임의사를 밝혀주셔, 이사 1명, 감사1인을 신규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법

률에 의거하여 공모를 통해 일단 이사 1인 감사 1인 임원 후보자를 접수 받았다고 밝하다. 공개모집 결과 이사6명, 감사2명 총 8명이 후보자로 지원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연임에 동의해주신 이사들의 연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후 신임임원에 대하여 서류 검토 심사과정을 통해 선임할 것을 제안하다. 참석이사들은 의견 없이 이에 동의하다.

○○○ 감사가 재단의 감사로 활동했던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임이 어렵게 되었다고 밝하다.

이사장이 ○○○, ○○○, ○○○, ○○○, ○○○, ○○○ 이사의 연임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연임에 동의하다.

이사장이 신임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준비된 지원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신임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하여 참석이사에게 의견을 구하다.

○○○ 이사가 신임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참석임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밝하다. 참석이사 모두가 이에 동의하여 신임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참석이사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다.

무기명 투표 실시 결과 임원 총 9명 중 ○○○ 이사 지원자 8표, ○○○ 감사 지원자 8표, 기권 1표을 얻어, 이사장은 ○○○ 이사 지원자와 ○○○ 감사 지원자를 재단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밝하다. 참석이사들은 의견 없이 이에 동의하다.

이사장은 제138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연임에 동의한 ○○○, ○○○, ○○○, ○○○, ○○○, ○○○ 이사를 선임하고, 사임한 ○○○ 이사를 대신하여 ○○○ 신임 이사, 임기만료예정인 ○○○ 감사를 대신하여 ○○○ 감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다.

제139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39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제139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장학재단 직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 검토에 의거하여 총액 인건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편성 제도를 마련하여 재단의 보수규정 연봉 한계액표를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재단은 설립 이후에 연봉한계액표를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서 보수체계의 하한액 부분이 타 기관에 비해서 매우 많이 낮은편이며, 재단의 실제 초과근무시간 및 시출연기관의 초과근무 평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간외근무를 산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부장이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과 평생교육정책관과 협의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출연기 관 연봉인상률의 50%를 반영하여 보수규정 <별표1>직급별 연봉 한계액 표를 개정하고, 시간외근무를 400시간으로 조정을 통해 수당의 일부를 개인별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급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기본급 조정에 따라 수당이 인상되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나하고 묻다. ○○○

부장이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총액인건비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외근무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말하다. ○○○ 이사가 기본급에 연계된 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다. ○○○ 부장이 재단에는 직급수당만 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재단은 기본급이 낮고, 시간외 근무 시간이 많아 직원들의 업무에 무리가 오고, 다른 타 출연기관과 대비해서도 시간외 근무 시간이 많음을 설명하다. ○○○ 이사가 재단 연봉한계액표의 일부 기준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9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40호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40호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공무국외여행 관리 운영에 의거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제정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지금 현재 여비규정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주요내용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해외 현지활동,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항공마일리지 관리 방안, 여행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다.

○○○ 부장이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을 위해 타 출연기관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서울장학재단의 조직 규모에 맞게 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 하는 것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0호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41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41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에 의거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 및 서울장학재단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부장이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준용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요

청한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및 퇴직 후 취업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 하였다고 설명하다.

○○○ 감사가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들의 가액 범위에서 서울시에서는 박원순법에 따라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별표1]경조사비의 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을 제안하다. 이사장은 ○○○ 감사의 의견에 따라 경조사비의 금액을 5만원으로 수정하며, [별표1]의 비고 다와 라의 가액 범위도 5만원으로 수정 안건의 의견을 정리하다.

이사장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1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은 [별표1]경조사비 5만원 및 가액범위 5만원 이내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42호 2016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42호 2016년 사업 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안건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을 보고하다.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와 관련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 선발을 시행하고자 말하다. 꿈나무 장학금의 경우 동아출판(주) 기부금 중단으로 인해 서울장학재단 사업계획에서 제외됨을 설명하다.

이사장은 꿈나무장학금 기부자인 동아출판(주)에서 2016년 계획된 기부가 어렵다라고 연락을 해와 부득이하게 꿈나무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또한 지난 이사회에서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가 대학이 전국으로 확대 되면서 신청시기가 지연되고 소득분위 2분위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 접수결과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많아, 장학금 이중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장학생을 선정하면 일부 예산이 불용될 수 있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소득분위 기준을 3분위로 조정하고 대학분야 장학사업을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 부장이 추가모집은 한 500명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며, 조례 개정 이후 모집시기가 늦춰지다 보니 한국장학재단 및 교내 장학금을 미리 수령하여 이중지원이 되는 학생이 많아 3분위로 확대해서 추가모집의 안을 설명하다.

이사장은 추가모집 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3분위 이하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요청하다.

○○○ 부장이 2016년 꿈나무장학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부금 37,000,000만원 중단으로 인해 세입 및 세출 실행예산 변경이 됨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2016년 사업 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2호 2016년 사업 계획 및 실행예산 일부 변경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43호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43호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현재 서울시의 2017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고, 2016년 사업이 진행 중 이지만 재단의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주무관청과 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2017년의 서울시 사업예산이 확정된 사업계획은 2016년 결산과 함께 내년 2월 이사회 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 부장이 배포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사업계획과 실행예산을 비교하여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사가 현재 장학금은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상 한정되어 있는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비, 대안학교의 학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이사가 장학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에 재원을 지원해서 장학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지 묻다. 이사장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장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교육청에 사전 문의 한 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지난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참석하신 교육청의 ○○○ 이사에게도 확인을 했다고 말하다. ○○○ 이사가 지난 26회 임시이사회때 서울평화희망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하다. 이사장은 단순히 장학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발과정에서 최종 심의는 서울장학재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3호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6년 11월 25일